

오보는 반론 아닌 정정으로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중재위원

언론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반론보다는 정정을 원하고 있다. 정정에 의해서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보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심하게는 가정파탄, 파산 등 치명적인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결자해지」의 원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보로 분쟁을 일으킨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통해 매듭을 풀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반론만으로는 오보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반론은 객관성 없는 변명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대로 현행 언론중재제도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해석하는 한 현행중재제도를 통한 만족스러운 권익회복이 어렵다고 피해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6년 1월 28일 현행 언론중재제도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해석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운용된다면 언론쪽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반론을 게재 또는 방영해주기로 한다면 그 지면이나 방영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이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든 간에 보도내용을 둘러싼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분쟁은 반론이나 정정의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반론으로 수습이 될 수 있는 사안과 정정보도가 아니고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안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론과 정정, 반론권과 정정청구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 기능도 다르고 효과도 판이하게 나타난다. 사전에 의하면 반론은 「남의 비난에 대하여 되받아 하는 의논」, 정정은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곳을 고쳐서 바로잡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반론권은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 등을 했을 경우 그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된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오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각각 이해되고 있다.

반론권을 가장 먼저 입법화했다는 프랑스에서도 1881년 7월 29일에 제정된 법에서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구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직무와 관련하여 오보가 있었을 경우 그 공권력의 수탁자는 언제든지 해당 매체에 대해 가장 빠른 호의 1면에 정정 기사를 게재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론권에 대해서는 보도기사에 이름이 게재된 사람은 누구든지 같은 면에 같은

종류의 기사를 원래 기사 2 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판 라디오·텔레비전 윤리강령도 반론의 기회제공 항목 4 항에서 사실관계의 착오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정하고 기사에 대해 정당한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정이나 반론은 지체없이 첫 보도를 접한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적절한 형태로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이하 생략)고 반론과 정정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어 반론으로 가능한 경우와 정정보도를 해야만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론과 정정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언론사들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반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반론으로, 정정해야만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정보도를 해주도록 권유 또는 촉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재회의에 출석하는 피신청인(언론사측) 가운데는 반론과 정정의 구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모르는 척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명히 정정 또는 반론을 해주어야 할 사안임에도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대응은 하지않고 무조건 정정도, 반론도 해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재회의에서의 합의율이 20% 내외에 불과한 것도 이의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불성립되고 취하된 것 중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해명성 보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대로 된 반론이나 정정 보도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거부적인 대응은 무조건적 이거나 언론의 힘을 배경한 고압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실증적이고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대응으로 반론을 거부하고 정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추궁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문제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어야 한다. 즉 「공공의 이해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다소의 공익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목적이 공익이 아닌 다른데 있을 때에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알려져 있다. 위의 두 가지 점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한 다음 기사내용에 대한 진실증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의 세가지 요건에 관해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운다면 피해자도 더 이상 정정이나 반론의 게재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히 오보는 반론 아닌 정정으로 피해구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가 지금보다는 좀더 전문화된 인력을 내세워 중재신청과 법원의 제소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